

## 8. 교직과정

사범대학 이외에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학부(과) 학생들 중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

###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주전공 선발]

- 1) 시행시기: 매년 5월 중
  - 2) 선발대상: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학생으로서 선발당시 제2학년 재적생
    - ▷ 교직과정 이수자는 표시과목 관련 전공별로 선발인원이 정해지므로 전공 배정이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전공 배정 후 해당 전공의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전과 또는 전공변경을 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에서 제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3) 선발기준
    - 가) 성적, 적·인성검사 등을 포함하여 학과(전공)별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 나) 복학생, 재입학, 편입학생의 기준
      - ▷ 3학년으로 복학·재입학·편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한 경우는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함. 다만, 해당학과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재입학 한 경우에만 「초·중등교육법」 별표2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7호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 ▷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결원을 기존의 교직과정 이수 예정 신청자 중 순위상 차 순위자가 없어 재학생으로 총원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우리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는 기간은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일 전까지이다.
- ※ 편입을 위해 전적대학 자퇴로 인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전적대학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만 가능

4) 선발 승인인원 : 교직 승인인원의 범위 이내

<우리 대학교 학부(과)별 교직과정 설치 승인 인원 (2022학년도 입학자 기준(2023학년도 선발)>

대학	학과명	표시 과목	승인인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3
	소계		3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상업	3
	경제학과	일반사회	1
	소계		4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화공소재전공	화공	1
	화학공학부 화학공정전공	화공	1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화공	1
	소계		3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농공	1
	식품공학과	식품가공	1
	소계		2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일반사회	1
	사회학과	일반사회	1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2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2급)	2
	소계		6
생활과학대학	생활복지학과	가정	2
	식품영양과학부 식품학전공	영양교사(2급)	2
	식품영양과학부 영양학전공	영양교사(2급)	1
	의류학과	가정	1
	소계		6
예술대학	미술학과	미술	2
	국악학과	음악	1
	디자인학과	디자인	1
	소계		4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	2
	영어영문학과	영어	2
	불어불문학과	프랑스어	1
	독일언어문학과	독일어	1
	일어일문학과	일본어	2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2
	사학과	역사	1
	소계		1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수학	2
	물리학과	물리	3
	화학학과	화학	2
	생물학과	생물	1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	지구과학	1
	소계		9
<b>총 계</b>			<b>48</b>

5) 선발방법 및 절차

가) 비사범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공고: 매년 5월 중

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신청 접수 및 선발: 매년 6월~7월

▷ 교직과정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직과정이수예정신청서를 선발기간 내에 소속

학과에 제출

- ▷ 학과(전공)별 선발기준에 의거 소속 학과에서 선발
- 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매년 7월말

[복수전공 선발]

- 1) 시행시기: 매년 8월초
- 2) 선발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음)
  - 나)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다) 사범대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부)를 복수전공 중인 자
- 3) 유의사항
  - 가)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부)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복수전공 교원자격취득 불가
  - 나) 반드시 일반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이 되어야 교직 복수전공 신청 가능
    - ▷ 일반 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도 교직 복수 전공은 자동으로 취소됨
    - ▷ 일반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교직 복수전공 선발에서 탈락되어도 일반 복수전공은 그대로 이수할 수 있음
  - 다) 대상학생의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입학정원의 인원제한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며, 잔여인원을 다음 학기에 추가 선발하지 않음
  - 라) 대상 학생의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입학정원의 인원제한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 하나, 졸업(수료) 유보자는 신청 불가
  - 마)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기 선발된 학생(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이 일반 복수전공을 취소할 경우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복수전공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전공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 가능함(다만,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하며, 복수전공을 취소하고 부전공 승인을 받아야 함)
    - ※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
- 4) 선발 승인인원
  - 가) 사범대학 학부(과): 입학정원의 100%이내
  - 나)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5) 선발방법 및 절차
  - 가)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공고: 매년 8월초
  - 나)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접수 및 선발: 매년 8월 초 ~ 9월 중순
    - ▷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복수

전공 소속 학과에 제출

▷ 학과(전공)별 선발기준에 의거 소속 학과에서 선발

다)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공고: 매년 10월 초

## 나. 교직자격 무시험검정 기준(교원자격 취득 요건)

[전공영역]

### 1) 전공교과목 이수학점

구 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 이후 편입학자 포함)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주 전 공	42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0학점	50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8학점
복수전공	42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42학점	50학점	특수관련 42학점 자격종별 38학점
부 전 공	30학점(2008학년도부터 폐지)		폐지	

### 2) 주요사항

#### 가) 이수학점 및 영역

- ▷ 졸업에 관한 전공 이수학점이 교직 전공교과목 이수학점 미만인 학과의 교직 이수자도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전공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 전공 교과목 이수 시 기본이수영역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나) 유의 사항

- ▷ 2008년 이전 입학자까지는 교과교육과목이 교직 이수 학점에 포함되었으나, 2009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과목(8학점)이 전공 50학점 내에 포함되며, 표시 과목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 ☞ 교과교육: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 ▷ 특수교육학부는 특수교육학부 사무실 및 교직사정 담당 부서에 별도 문의
- ▷ 2008이전 입학자(2010이전 편입학자 포함): 교과구분이 '전공'인 교직과목 또는 교과구분이 '일선'인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 전공으로 이수한 교직과목 또는 일선으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을 제외한 전공 학점이 42학점이상이어야 함
- ▷ 2009이후 입학자(2011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과구분이 '일선'인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 일선으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을 제외한 전공학점이 50학점 이상이어야 함

[기본이수영역]

1) 기본이수과목 이수학점

2006학년도 이전입학자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일반학과	특수관련학과
5개영역 (14학점)이상	5개영역 (14학점)이상	10개영역 (28학점)이상	7개영역 (21학점)이상	14개영역 (42학점)이상

2) 주요 사항

가) 기본이수영역: 기본이수교과목 표에서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 기본이수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필수 교과목

☞ 『전남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교직원정보→교원자격취득요건』 참조

나) 입학자별 이수기준

- ▷ 교과과정 적용년도에 해당하는 기본이수영역 중 7개영역(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5개 영역) 이상 이수해야 함
- ▷ 교육부에서 고시한 1개영역에 대하여 우리대학에서 2과목을 지정한 경우, 2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1개영역으로만 인정됨

[예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대학	관련학부 (전공)	표시 과목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우리대학교 지정		비고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물리	물리교육실험	물리실험1	PHY1001	
				물리실험2	PHY1003	
			현대물리학	현대물리	PHY2011	

- ▷ 기본이수과목을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개설학과에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타 대학에서도 기본이수과목으로 설정이 되어있어야 함)
  - ※ 기본이수과목 이수 확인서(타대학 작성) 및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첨부
- ▷ 기본이수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이수교과목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공영역 이수 학점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음(교과구분이 '일선'인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교직영역]

1) 교직과목 이수학점

영역구분	2008이전 입학자 (2010이전 편입학생 포함)	2009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생 포함)	2013이후 입학자 (2015이후 편입학생 포함)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및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2학점) 교육사회(2학점) 교육철학및교육사(2학점) 교육과정(2학점) 교육평가(2학점) 교육행정및교육경영(2학점) 교육방법및교육공학(2학점)	* 2008이전 입학자는 7과목 모두 이수 * 2009이후 입학자부터 개설된 8과목 중 7과목(14학점) 이상 이수 * 2013이후 입학자부터 개설된 8과목 중 6과목(12학점) 이상 이수
교직소양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 2013이후 입학자부터 3과목(6학점)
교육실습	교육실습(2학점)	학교현장실습(2학점,4주간)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학교현장실습(2학점,4주간)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 2009이후 입학자부터 봉사활동 신설
교과교육 (표시과목 관련)	00교육론(2학점) 00교재연구및지도법(2학점)	00교육론(3학점) 00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00논리및논술교육(2학점)	00교육론(3학점) 00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00논리및논술교육(2학점)	* 2009이후 입학자부터 전공영역 학점에 포함

※ 교과구분이 '전공'인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2009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반영됨

※ 교직과목을 타 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되며, 명칭이 다를 경우 해당 개설학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2) 교직이론영역

- 가) 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이수하며, 복수전공의 교직이론과목은 면제 가능
- 나)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교직이론과목은 면제 가능
- 다) 종전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를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동일교과목인 "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 중 한과목만 이수하면 됨

3) 교직소양영역

- 가) 2009이후 입학자부터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나) 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이수
- 다) 2급이상 교원자격증(7호 기준 대상자)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면제 가능

4) 교과교육영역

- 가) 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나)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다)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해당학과는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직무관련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총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됨

라) 2009이후 입학자부터는 반드시 8학점(3과목: **00**교육론, **00**교재연구 및 지도법, **00**논리 및 논술교육)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마)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해당학과는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직무관련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총 전공과목 이수학점(50학점)을 충족하면 됨

5) 교육실습영역

구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2008이전	2009이후 교과과정 적용자
대상	*교직이수자 전체 이수	해당없음	*2009이후 입학한 교직이수자 전체
수강신청	*매년 1학기 개설 <4학년 재학중 이수>	해당없음	*봉사활동 실적이 <b>60시간 이상</b> 누적되는 학기에 수강신청
교육실습 면제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한번만 이수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면제	해당없음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한번만 이수 *2급이상 교원자격증(7호기준 대상자)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면제 가능

[교직 적성·인성검사]

1) 검사 개요

가) 목적: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점정 평가에 반영

나) 대상: 교직이수자 전체

다) 검사 방법: 지필식, 210문항

라) 검사 시기: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시

마) 결과 발표: 검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포털 신청 화면에서 직접 결과 확인)

2) 입학년도별 합격기준

입학년도	합격기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적격판정 1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격판정 2회

3) 유의 사항

가) 부적격 판정 시 우리 대학에서 자체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만 재응시 기회 부여

나) 현 재학생은 수료 이전에 합격기준을 달성해야 함

다) 졸업 전까지 본 검사에 미 응시, 부적격 판정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 실습 개요

- 가) 목적: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재학생 및 수료생들에게 예비교사로서 안전의식 제고 및 위기상황 시 학생을 지도하고 구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나) 대상: 교직이수자 전체
- 다) 실습시기 및 횟수: 교원양성과정 이수하는 동안 총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성인지 교육]

1) 교육 개요

- 가) 목적: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재학생 및 수료생들에게 예비교사로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
- 나) 대상별 이수 횟수: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2회 이상 이수

[기타 영역]

1) 성적기준

구 분	2008이전 입학자	2009이후 입학자	2013이후 입학자
사범대학생 및 교육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공 제한요건 없음</li> <li>* 단, 사범대학생이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을 부복수전공하는 경우 2005.2학기 이후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평점을 각 80점(2.75) 이상 취득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li> <li>: 편입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 이전 성적은 미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과목 평균평점: 75점 이상(교과교육 포함)</li> <li>* 교직과목 평균평점: 80점 이상(교과교육 미포함)</li> <li>* 단, 교양과목 성적은 미반영</li> </ul>
비사범대 교직과정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평점 각 80점(2.75) 이상</li> </ul>		

2) 산업체 현장실습

가) 대상: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 교직이수자

- ▷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나) 이수절차

- ▷ 실습업체 선정 및 현장실습 실시
  - ☞ 대학에서 기승인한 협력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실습업체 선정 →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 ☞ 대학에서 미승인된 산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산업체 협력기관 승인 요청 (산업체현장실습 지정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체 현황 각1부 제출) →



협력기관 체결 승인 통지 →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3) 기타 유의사항

- 가) 졸업사정과 교직사정의 기준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나)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다)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복수/연계/부전공의 교원자격 취득 불가
- 라) 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지정과목으로, 대체교과목 신청을 통한 대체 이수 불가
- 마)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입학자는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가 불가능함. 다만,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편입학한 자는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함
- 바) 교직 연계전공 이수예정자는 아래 표시과목으로 전공하는 교직이수자 중에서만 선발 가능

표시과목	관련 표시과목
통합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특수교육학부]

1) 주전공

구분	2006이전 입학자	2007~2008 입학자	2009이후 입학자
전공 영역	전공 42학점이상	전공 72학점이상 : 특수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전공 80학점이상 : 특수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관련 전공과목 38학점 ※ 표시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 간 5과목(15학점) 중복인정	
기본 이수 영역	14학점(5과목)이상	28학점(10과목)이상 : 특수관련 14학점(5과목) +표시관련 14학점(5과목) ☞적용대상 : 유아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의 경우 14학점(5과목)이상	42학점(14과목)이상 : 특수관련 21학점(7과목) +표시관련 21학점(7과목) ☞적용대상 : 유아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 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 교직영역은 일반학과와 동일함

2) 복수전공

구분	2006이전 입학자	2007~2008 입학자	2009이후 입학자
전공 영역	전공 42학점 이상	°전공 72학점이상 : 특수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전공 80학점이상 : 특수관련 전공과목 42학점 +표시관련 전공과목 38학점 ※ 표시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전공학점 간 중복인정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 간 5과목(15학점) 중복인정	
기본 이수 영역	14학점(5과목)이상	° 28학점(10과목)이상 : 특수관련 14학점(5과목)+표시관련 14학점(5과목) ☞적용대상 : 유아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 초등특수교육전공의 경우 14학점(5과목)이상	°42학점(14과목)이상 : 특수관련 21학점(7과목) +표시관련 21학점(7과목) ☞적용대상 : 유아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 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 주 복수전공 간 전공학점 중복인정 ° 특수주전공이 특수복수전공 시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중복인정 ° 일반주전공이 특수복수전공 시 : 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중복인정			

## 다. 교직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 1) 신청대상

- 가) 사범대학 및 비사범대 교직과정 이수자 중 졸업(예정)자
- 나) 초등학교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편입학생 중 졸업(예정)자
- 다)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2) 신청 시기 및 방법

#### 가) 신청 시기

- 8월 졸업(예정)자: 6월 말
- 2월 졸업(예정)자: 12월 말

※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원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교원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 나) 신청절차: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주.복수전공 별도 작성) → 주전공 학과에 일괄 제출 → 무시험검정 실시 및 결과 통보(학사과) → 교원자격증 발급(졸업일자)

### 3) 제출서류

####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주전공 및 복수전공 무시험검정원서를 별도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에 제출

- 나) 산업체현장실습 이수증<공업계학과 대상자>

#### 다)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 대상자에 한함>
-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 대상자에 한함>

#### 라) 학부성적증명서<교육대학원 대상자에 한함>

#### 마)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7호기준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에 한함

#### 바)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6.23.신청자부터 적용)

### 4) 7호기준 대상자

- 가)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 7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자격증

-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 중등학교: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17년도 신·편입학부터 적용)

5)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일반학과]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및 교과교육과목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일반학과]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b>21학점(7과목)이상</b> 및 교과교육과목 <b>8학점(3과목) 이상</b> 포함
	[특수관련학과]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단,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기본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 간 5과목(15학점)중복인정	[특수관련학과]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단,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기본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 간 5과목(15학점)중복인정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b>교직이론 14학점 (7과목) 이상</b> - <b>교직소양 4학점 (2과목) 이상</b>	♦22학점 이상 - <b>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b> - <b>교직소양 6학점 (3과목) 이상</b>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60시간 이상)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60시간 이상)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b>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b> ♦ <b>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b>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017년 2월 졸업자는 1회 이수 / ♦2017년 8월 졸업자부터 2회 이수 (2016년 2월(2015학년도 2학기) 이전 수료자는 1회 이수)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기타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